

한국경쟁법학회, 「21세기 경쟁법과 정책의 방향」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한국경쟁법학회는 2001년 4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에서 「21세기 경쟁법과 정책의 방향」에 관한 제1차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움에는 독일 미인쓰대 Meinrad Dreher 교수, 일본 관서대 Toshiaki Takigawa 교수, 이화여대 법대 양명조 교수, 김&장 법률사무소 정경택 변호사, 성균관대 법대 정호열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정책개발기획단장, 한화종합화학 이재웅 상무 등 경쟁법 정책당국과 학계·업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동 심포지움에서 Meinrad Dreher 독일 미인쓰대 교수는 유럽공동체조약 제81조와 제82조 및 합병통제규칙(FKVO)을 법원(法源)으로 하는 유럽경쟁법은 초국가적 법체계이며 사인간 법률관계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럽경쟁법의 성과로 조약 제81조와 제82조에 의한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납용규제를 들면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81조·제8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가의 입법행위가 카르텔을 형성시켰을 경우에 유럽법원이 조약 제81조·제82조에 의해 국내법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제81조와 제82조의 적용범위는 회원국간의 거래를 제한하기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되는데 유럽법원이 국가거래제한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국내카르텔당국도 위반행위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충돌시에는 유럽공동체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함으로써 공동체법의 적용영역을 넓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Meinrad Dreher 교수는 유럽경쟁법의 또 하나의 성과로 합병통제절차의 예방적 효과를 언급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합병에 대한 금지결정이 예견되면 즉시 자진 철회 또는 화약의 형태로 협상에 들어감으로써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해결과제로서 네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 조약 제81조 제1항에 빙하는 합의는 유럽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절차에서 위원회가 조약 제81조제3항의 예외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위원회의 업무를 과중시켜 점차 비공식절차인 안위장(comfort letters)이라는 행정서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안위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형적인 사건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일괄예외규칙이 오히려 계약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제약하여 계약내용을 정형화된 형태로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셋째, 회원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큰 카르텔법을 유럽위원회보다는 독립적인 유럽카르텔정을 설립하여 관장하게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국제적인 기업집단의 합병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제경쟁질서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종·단기적으로는 양자협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Toshiaki Takigawa 일본 관서대 교수는 일본경제의 취약분야는 경쟁이 미흡한 서비스산업 분야로 서비스 부문의 낮은 경쟁력은 소비자후생 저하에 그치지 않고 일본산업 전체의 경쟁력까지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하고 일본의 경쟁정책이 미국과의 통상협상 결과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소제도, 특히 사적금지명령의 도입으로 경쟁당국은 공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것이고 일반시민들과 기업들은 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경쟁법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명조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제반 규정이 정책이 아닌 법의 원칙으로서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 예견가능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고, 형식적으로도 중요한 행위위주로 정리되어 경쟁질서보장이라는 메세지가 뚜렷이 전달될 수 있도록 법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공정위가 지상 목표로 삼는 것은 시급한 시장구조의 개선과 기업구조조정 등의 중요성을 회복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보호나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교섭력불균형의 문제는 일반 사법원리로 해결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세계적 경쟁질서의 수립과 경쟁당국간 협조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정경택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모든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경쟁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개별 산업에 정통한 전문가 양성 및 제한 인력을 개별 기업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분야에 투입하여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경쟁실체법이 그 본질상 정책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위는 수법자들에게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주순식 공정위 정책개발기획단장은 소비자보호정책이 경쟁정책과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때 정책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언급하였다.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법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의 제2차 회의가 지난 5월 15일(화)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 B룸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공정거래행동규범(초안)을 심의하였고, 공청회를 5월 30일(수)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정거래행동규범의 목적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와 실행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행동규범 제정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로는 첫째, 경쟁법의 자율적 준수의 정착을 위해서 최고경영자가 경쟁법 준수의 의지와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의 자율적 준수 노력을 격려하여 경쟁법의 자율적 준수가 정착되도록 하며, 둘째,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경쟁법 자율준수에 관한 권한을 부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셋째,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자율준수편람의 제작과 배포, 넷째,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중심의 자율준수교육 실시, 그리고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 위반행위의 발견·보고 체제의 구축과 당연위법행위 등에 대한 종업원의 제재 규정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등이다.

본 회의에는 이인원 롯데백화점 사장, 이인호 신한은행장, 이수창 삼성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강석진 GE코리아 사장, 이양순 한국공정거래협회 회장, 박길준 연세대 법대 교수, 배광선 KIET 원장, 이재후 김&장 변호사, 이남주 YMCA 사무총장 등 자율준수위원회 위원들과 정태승 전경련 전무와 박형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조사팀장,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